

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·변경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90일

신청인	명 칭	
	소재지	
	대표자	전화번호

사업의 명칭

사업의 목적

사업시행지역	면 적		
			m ²
사업의 내용	자금조달 계획 (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 다)	합 계	
		국내 자본	소 계
			국 고
			지방비
			자기자금
			융자금
			그 밖의 자본
변경내용(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	외국 자본	소 계	
사업기간		차 관	
		그 밖의 자본	

「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달빛철도 건설

사업 실시계획의 ☐ 승인
☐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 가.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나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·물건 또는 권리(이하 “토지등”이라 한다)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 다. 계획평면도·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라. 사업 시행 기간 마.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「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합니다) 1) 연도별 투자계획 2)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3)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바. 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·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사.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아.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자. 지진피해 경감대책 차. 「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(이하 “대체공공시설등”이라 합니다)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카. 「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타. 「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파. 「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라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의 내용 하. 「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거. 「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너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(설계와 관련한 심의로 한정합니다)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서류 2.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나.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